



컬럼비아 특별구
주 교육감 사무국
1050 First St., NE, Washington, DC 20002

출석 및 무단결석 자료

학부모/보호자 님,

매일 학교에 출석하면 학습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자녀가 학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학습의 연속성을 지원하고 자녀가 학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이든, 무단 결석이든 모든 결석은 자녀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 자녀의 학교는 2025-26학년도에 자녀의 무단결석이 10회 이상 누적되었다는 사실을 주 교육감 사무국(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SSE)에 통보했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법률에 따라 자녀가 10회 이상의 무단결석(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만성 무단결석’으로 정의함)을 할 경우 저희는 본 안내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은 자녀가 학교에 다닐 때만 가능합니다. 2025-26학년도가 시작되면서 출석 및 학습 참여는 계속해서 자녀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서신에는 무단결석 방지를 위해 가족을 지원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정보
- 결석 및 무단결석과 관련한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설명
- 귀하와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단체의 목록.

2025-26학년도의 출석 기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출석 기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자녀의 학교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출석 문제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거나 추가 자료에 대해 알아보려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DC 공립학교(DCPS) 청소년 참여 사무소, (202) 727-0488 (DCPS 학부모 전용)
- DC 학생 권리 옹호 사무소, (202) 741-4692 또는 student.advocate@dc.gov
- DC 공교육 옴부즈맨 사무소, (202) 741-0886 또는 ombudsman@dc.gov.

자녀의 정기적인 학교 출석을 도와드리므로써 매일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 출석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문서에 포함된 자원 섹션을 참조하거나 attendance.dc.gov를 방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Antoinette S. Mitchell, Ph.D.
교육감

무단결석이란?

무단결석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에 결석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한 학년도에 10회 이상의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이를 만성 무단결석이라고 합니다. (5A DCMR § 2199).

이것은 만성 결석과는 다릅니다. ‘만성 결석’은 학생이 유고결석과 무단결석을 포함하여 수업일의 10% 이상을 결석하는 것입니다. (5A DCMR § 2199). 한 학년도의 수업일은 180일이므로 학생이 한 달에 이틀씩만 결석해도 만성 결석이 됩니다.

매월 2일 x 9개월 = 18일 = 수업일 180일 중 10%

출석 및 무단결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학교 출석을 우선시함으로써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일과 설정 및 유지:** 취침, 기상, 식사, 숙제 등을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합니다.
- **지속적인 정보 확인:** 학교의 출석 규정을 알고, 학교 시작 시간을 숙지하고, 유고결석과 무단결석의 차이를 이해합니다.
- **건강 및 웰빙 모니터링:** 독감이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등 일반적인 질병의 증상을 알아 두고,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료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집에 있도록 합니다. 학교에 자녀의 질병을 알리고, 그 다음 조치에 관한 학교의 모든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자녀가 매년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하고, 필수 예방 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컬럼비아 특별구의 백신 접종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osse.dc.gov/immunization>을 참고하십시오.

조기 경고 신호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 **질문하기:** 자녀의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보고, 시간을 내서 지도 내용 및 자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자녀의 교사와 소통합니다.
- **주의를 기울일 부분:** 자녀가 학교에 흥미를 잃고 있다는 초기 징후가 나타나는지 살핍니다. 친구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가정 내 관계에 변화가 있는지 살핍니다.

관계가 악화되면 자녀가 학교에 대한 흥미 잃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발견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bh.dc.gov/page/behavioral-health-resource-directory.

- **행동 관찰하기:** 부정적인 행동 변화가 있는지 살핍니다. 자녀가 거리를 두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비행을 저지르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상담사를 찾아야 합니다.



자녀는 노숙 중이라도 학교 등록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이 노숙하는 동안에도 자녀는 원래 학교에 계속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학교란 자녀가 노숙 전에 다니던 학교 또는 자녀가 마지막으로 등록한 학교입니다. 또한 자녀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자녀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42 U.S.C.

학교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요?

학교는 출석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부모가 교사 및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도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학교는 출석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 **연락 가능 상태 유지:** 학교에 귀하의 정확한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장, 집, 휴대전화, 돌보는 사람(있는 경우)의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정보 등 추가 연락 수단을 제공하는 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솔직하게 말하기:**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예: 이혼, 가족의 사망 또는 질병, 반려동물 실종, 이사 가능성, 노숙 생활 등)에 대해 교장 및 학교 사회 복지사와 상담합니다. 교사가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사에게 자녀의 취미, 관심사, 학습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열린 태도:** 자녀의 진도, 출석,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데 관심이 있음을 학교 관계자와 교사에게 알립니다.
- **후속 조치:** 학교로부터 자녀의 결석에 대한 예상치 못한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교사나 학교에 연락해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자녀가 결석해야 하는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 자녀가 놓친 과제를 완료하도록 조정합니다. 자녀가 놓칠 학습 시간을 가능한 한 최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결석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함께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동의 교육에 참여시킵니다.

- **참여:** 가능하면 학교 활동 및 행사에 참석합니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참석합니다.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배우고, 배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 **다른 사람의 도움 구하기:** 자녀가 매일, 모든 수업에 출석하도록 하는 전략을 포함하여 이웃 및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서로의 자녀와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학부모들과 전화 번호를 교환하여 서로 돕습니다.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5~17세 학생은 무단결석이나 지각으로 정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DC 법령 § 38-236.04 (c)).

대부분의 경우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등록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5~17세 학생은 무단결석 또는 지각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단 학생이 20일 이상 연속 무단결석을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DC 법령 §38-

가족이 알아야 할 DC 출석 및 무단결석 법률 및 규정은 무엇인가요?¹

DC 법령(DC Code)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de.dccouncil.gov/us/dc/council/code
DC 시 규정(DC Municipal Regulations, DCMR)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regs.dc.gov

학교에 반드시 가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컬럼비아 특별구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5세(학년도의 9월 30일 또는 그 전에 5세가 되는 경우)부터 18세까지 정규 학년도 동안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 요건을 필수 출석이라고 합니다. DC 법령 § 38-202(a). 대면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학교 등록 및 출석은 필수입니다.

학교가 가상(온라인/원격 학습)으로 운영되는 경우 학교에 출석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가상 학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하고 학습에 참여하고 과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학생은 출석을 위해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카메라를 켜서 출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 출석하는지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학부모와 보호자 등 아이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사람은 정당한 결석 사유가 없는 한 자녀가 매일 학교에 다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DC 법령 § 38-202(a).

학부모는 학교에 언제 결석 사유를 전달해야 하나요?

결석 사유는 자녀가 학교에 복귀한 후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후 5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를 전달하지 않는 한 모든 결석을 무단결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5A DCMR § 2102.4.

학교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결석 범주를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¹ 사립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공립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교 차원의 개입(예: 학생 지원 팀)과 관련된

이 안내서의 요구 사항은 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이란 무엇인가요?

모든 학교는 타당한 사유로 인한 결석(유고결석)의 범주를 게시해야 합니다. (5A DCMR § 2102.3.) 이러한 범주는 학교의 학부모 핸드북 또는 학생 핸드북에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학부모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학교는 최소한 아래 나열된 유고결석 범주를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 나열된 범주 외에도 학교에는 다른 유형의 유고결석 범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 학생의 질병 또는 기타 적절한(정당한) 의학적 원인
- b) 격리, 전염병, 감염 또는 의학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한 기타 상태로 인해 DC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제외된 경우
- c) 학생 가족의 사망
- d) 학생이 소송 당사자로서 또는 소환장에 따라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 종교적인 휴일 준수
- f) 학교 당국에 의한 적법한 정학 또는 퇴학 조치
- g) 악천후, 공식 활동, 휴일, 장비 고장, 안전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그 외에 수업 중단이 필요한 상태 또는 비상 상황으로 인한 수업 일시 중단
- h) DC가 학생 수송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DC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i) 학생을 위한 병원 진료 또는 치과 진료 예약
- j) 파병 중, 파병 직전 또는 파병 직후의 군 복무 중인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를 학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석
- k) 교육 기관에서 승인한 긴급 상황 또는 기타 상황.

무단결석이란 무엇인가요?

위에 나열된 유고결석 범주를 포함하여 자녀의 학교에서 정의한 유고결석 범주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결석은 무단결석입니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결석도 무단결석입니다. DC 법령 § 38-203(c)(2).

중요한 팁: 자녀의 학교에 문의하십시오! 학부모/보호자는 수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석 사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는 결석 사유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자체 정책이 있습니다. 핸드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학부모 핸드북이나 학생 핸드북 또는 학교 출석 정책 및 절차가 포함된 기타 문서의 사본을 학교에 요청하십시오.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학교는 학부모나 보호자 또는 학생이 학교의 출석 위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법 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A DCMR § 2103.2(c)(5)).

- **모든 무단결석에 대해:** 학교는 무단결석이 발생한 당일에 학부모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5A DCMR § 2103.2(c)(1)).
- **한 평가 기간(예: 분기 또는 3학기) 동안 5일 무단결석 후:** 학교는 학생을 학교 기반 학생 지원 팀(school-based student support team, SST)에 의뢰해야 합니다. 학교는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A DCMR § 2103.2(c)(3)). SST 팀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근면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 학생의 출석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무단결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기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팀과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 학생의 무단결석 행위에 대해 시기적절히 대응합니다.
 - 학업이나 진단 또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 가능한 경우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의뢰하는 등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의 출석률을 향상시킵니다.
 -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의하여 실행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합니다.
- **10일간의 무단결석 이후:** 학생에게 배정된 SST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전제로 학생에게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및 기타 지원 또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즉각적인 개입 계획을 학교 행정관에게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5A DCMR § 2103.2(c)(4)). 학교는 또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학생을 OSSE에 보고합니다. (DC 법령 § 38-208 (b)).
 - 출석 요건 및 형사 처벌에 관한 MPD의 정보가 담긴 서신을 학부모에게 보냅니다. (DC 법령 § 38-207 (c)).

다른 기관들은 언제 알림을 받나요?

학교는 5~17세 학생의 무단결석이 10일째가 되는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OSSE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생의 나이에 따라 10일 또는 15일의 무단결석 후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다른 DC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²

5~13세 학생:

한 학년도에 자녀가 **10일간** 무단결석하면, 10번째 결석일로부터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는 DC 아동 및 가족 복지 기관(DC Child and Family Services Agency, CFSA)에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DC 법령 § 38-208(c)(1)(A)).

² 한 학년도의 마지막 10일 이내에 10번째 또는 15번째 무단결석이 발생한 경우, 학교는 이러한 의뢰 요건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DC 법령 § 38-208(c)(1)(C).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CFSA는 교육 방임에 대한 의뢰를 받은 후 학교가 학생 및/또는 가족과 연락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또 CFSA는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지, 또는 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른 개입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13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의뢰를 받았지만 학대나 방임의 우려가 없는 경우 CFSA는 의뢰를 거부합니다.
- 13세 미만의 학생에 대한 의뢰를 받았으며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CFSA는 분류 부서를 통해 의뢰를 수락하고 처리합니다.

14~17세 학생:

15일째 무단결석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2일 이내**에 학교는 **컬럼비아 특별구 상급 법원의 법원 사회봉사부(Court Social Services Division, CSSD)**와 **법무장관실(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 OAG)** 소년부에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OAG는 15일의 무단결석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석 요건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음을 서신으로 통지합니다. (DC 법령 § 38-208(c)(2)).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 학생은 기소, 전환 및/또는 지역 사회 기반 개입을 위해 CSSD 책임자에게 의뢰될 수 있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은 지역사회 봉사를 배정받고 법원의 감독/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을 “감독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무단결석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복지 서비스를 위한 중재에 의뢰되거나 지역 사회 봉사, 벌금 및/또는 구속으로 이어지는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원

Every Day Counts!는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Bowser 시장이 시작한 시 전체 차원의 노력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역사회 전체를 하나로 모아 학생과 가족이 DC 내 무단결석 및 만성 결석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출석 및 무단결석, 보육, 보건, 등록, 가족 및 양육 지원, 주택,